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결	서 무	간 사	위원장
재			

등록금심의위원회 5차 회의		일 시	2018.1.22.(월) 14:00
		장 소	본부관 311호
참석위원	정승렬(위원장), 김태호, 이호선, 이승현, 김남균, 원윤성 (이상 6명)		
업무지원	간사 : 조 준 / 서무 : 안정민		
불참위원	김이주		
의 제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 관련 심의		

## ◎ 회의내용

### 1. 개회선언

#### ■ 위원장

- 재적 위원 7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학년도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오늘 회의는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를 안건으로 함.
- 지난 회의에서 학교 측과 학생 측이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람.

### 2.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

#### ■ 학생 측 대표위원

- 각 학부(과) 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LT에서 개최한 대의원 회의 결과를 말씀드림.
- 학생 대표들은 학부 외국인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학교 측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등록금 인상으로만 해결하려하는데 법인도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대의원들은 학부 외국인과 대학원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근거가 부족하며 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 학교 측 대표위원

-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법인의 책무성 및 등록금 인상 요인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학교 측에서는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대의원들은 등록금 인상으로만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서도 전입금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였음. 2018학년도 본예산인의 법정전입금이 지닌해 대비 증가하는 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법정전입금 규모는 기본적으로 대상 인원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우리 대학의 법인은 실제 수익규모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전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부에서 정한 최소 요건인 사학연금부담금만큼은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최근 타 대학들의 학생들도 해당 대학 법인에서 법정전입금을 100% 충족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인이 법에 정한 책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우리 대학 법인이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나 매년 지속적으로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지, 등록금 의존율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학교 측 대표위원

- 학부 등록금 동결과 학생수 감소 그리고 등록금 외 수입 확대로 등록금 의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학부 외국인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은 학부 입학금 인하분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수입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물가상승률로 인한 재정 소요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적립금의 이자수입은 어떻게 산정되며 적립금 항목에 다시 투입되는 것인지 질의함.

■ 간 사

- 적립금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연구비, 장학금 등에 충당하고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적립금이 줄어들고 있다면 추가적인 지출에 적립금 대신 예비비를 투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 간 사

- 적립금 인출은 등록금 외 수입의 일부이며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적립금의 인출이 필요한 것임.
-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에 책정된 예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기 위해 예산에 미리 반영해놓은 것이지 통장에 예비비 금액만큼 돈을 쌓아 두고 있는 것이 아님.

■ 학생 측 대표위원

- 예비비를 예산규모의 1% 책정하도록 권고한다고 하지만 우리 대학보다 적게 책정한 대학도 있으며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예비비의 규모를 줄여도 될 것임.
- 타 대학의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법인의 책무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은 모두 비슷함. 사학연금만큼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함.
- 최근에 법인전입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법정부담금 요율이 인상되고 전체 교직원 급여 지급액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임.
- 법정전입금은 좋은 교수와 구성원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질의 유지 및 향상과 관련되는 것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학생들은 법인에 접근이 어려운 만큼 학교 측에서 법인의 책임을 강화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법인에 전달해 주시기 바람.
- 학생들은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통해서만 재정을 확충하지 말고 법인의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대의원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이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등심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다르지 않음.

- 법인으로부터 학생 측이 요구하는 답변을 받지 않는다면 등심위에서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인지 질의함.

■ 학생 측 대표위원

- 법정부담금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이 향후 법정부담금을 확충할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보여 달라는 것임.

■ 학교 측 대표위원

- 학생 측의 법인에 대한 요구는 학교 측 등심위 위원으로서 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님. 학교 측에서 학생 측과 논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들어 줄 수 있지만 법인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므로 계속 법인에 대한 문제만 제기한다면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움.

■ 학생 측 대표위원

- 법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등심위 회의에 전달하는 것이 학생 측 대표의 책임임.

■ 학교 측 대표위원

- 대의원 회의 이전에도 학생들과 교감이 있었을 텐데 오늘 학생 측에서 제기한 문제는 새로운 사항이 아니고 이미 지난 회의에서 많이 논의하고 답변한 것임. 따라서 4차 회의 말미에 언급한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제안함.

■ 학생 측 대표위원

- 등록금 책정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면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등록금 심의가 계속 지연된다면 2018 본예산 심사·의결 또한 미뤄질 수밖에 없으며 대학 전체적으로 3월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음.

=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함. =

■ 학생 측 대표위원

- 학생 대표 위원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며 학교 측에서 법인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면 최소한 생활비 장학금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학교 측 대표위원

-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전년 대비 생활비 장학금 100% 인상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며 학생 대표로서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임. 다만 학생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4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모보다 최소한의 증가는 가능할 것임.
- 앞으로 학생 대표로서 활동하면서 학우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학생처와 함께 논의하여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임.
- 법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법인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학생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생활비 장학금을 통해 좀 더 많은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생활비 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고려해볼 것을 제안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특정 계정의 금액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생활비 장학금이 전체 교내장학금 계정에 포함되는 만큼 생활비 장학금 집행액 확대 및 대상자 선정 등 세부사항을 2017학년도와 동일하게 학생지원팀과 추후 협의하면 될 것임.

### 3. 심의결과

■ 위원장

- 지금까지 총 5차에 걸쳐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 관련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학교 측과 학생 측이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2018학년도 학부 내국인 학생의 등록금은 동결함. 단, 입학금은 20% 인하함.
  - 2018학년도 학부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은 5% 인상함. 단, 입학금은 20% 인하함.
  - 2018학년도 대학원의 등록금은 1% 인상함.
  - 2018학년도 생활비 장학금을 2017학년도 대비 1억 6천만원 확대하여 편성함.

#### 4. 폐회선언

- 차기 회의는 2018학년도 본예산 심사·의결을 위해 2018.1.31.(수) 오후 2시에 개최하며 본예산 관련 사전 질의가 있을 경우 예산평가팀을 통해 질의하기로 정하고 폐회를 선언함. 끝.

2018. 1. 22.

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정 승



위원

김 인 준

위원

이 호



위원

*이승환*

위원

김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

김 태 호

*김태호*